

#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96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03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3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2. 1. 13.시행)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제명 ‘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’를 ‘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
- 위원회 존속기간을 ‘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’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(안 제2조)
-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(안 제8조)

#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조례의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서 위임한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됨.